

<별 지>

대통령령 제 호

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시험공고일”을 “시험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공기업(이하 “공기업”이라 한다)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정부투자기관 및 보증기관”을 “공기업 및 보증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,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(이하 “구성원”이라 한다)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·자본·그 밖의 권리 등(이하 “자산등”이라 한다)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산등에 대한 실사·재무보고·가치평가 및 그 자산등의 매도거래 또는 계약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(이하 “실사등의 업무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50이

상”을 “50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50이상”을 “50 이상인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15조의2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항의”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실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)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(구) 「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」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중 영어 과목은 그 <u>시험공고일</u>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(이하 “영어 시험”이라 한다)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4조(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)</p> <p>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p> <p>1. 「<u>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</u>」에 의한 정부투자기관(이하 “<u>정부투자기관</u>”이라 한다)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”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.</p> <p>1. 「은행법」 제2조의 규정에</p>	<p>제2조(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시험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공기업(이하 “<u>공기업</u>”이라 한다)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/p>

의한 은행, 정부투자기관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

2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14조(직무제한) ① (생략)

②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”라 함은 특정 회사의 자산·자본·그 밖의 권리 등(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“자산등”이라 한다)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·재무보고·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(이하 “실사등의 업무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③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,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(이하 “구성원”이라 한다)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

----- 공기업 및 보증기관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직무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,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(이하 “구성원”이라 한다)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·자본·그 밖의 권리 등(이하 “자산등”이라 한다)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산등에 대한 실사·재무보고·가치평가 및 그 자산등의 매도거래 또는 계약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(이하 “실사등의 업무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실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.

행하는 실사등의 업무는 제2항의
규정에 불구하고 공인회계사가
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
계사를 제외한다.

1. (생략)
 2.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
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
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
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
계사
 3.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
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
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
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
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
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
-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“대통령
령이 정하는 절차”라 함은 공인
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호의
1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
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
(「상법」 제415조의2의 규정에
의한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
하 이 조에서 “감사등”이라 한
다)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
고,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
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50 이상-----

 3. -----

----- 50 이
상인 경우-----
- ④ ----- “대통령
령으로 -----
----- 각 호의
어느 하나-----

----- 제415조의2에 따른 --

연는 절차를 말한다.

⑤ 공인회계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 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.

-----.

⑤ ----- 제4항의 -----

---.